

## 10.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재정경제원공고 제1998-2호 1998. 1. 10.

### 주요 골자

- 가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채권중 중소기업청장 및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대손금으로 손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함.
- 나.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의 범위에 대한 가족계획협회·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및 재단법인 북한 이탈 주민 후원회를 추가하고, 공익성 기부금 대상비목의 범위에 과학기술문화기금 출연금, 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의 박람회 개최비 및 연수원 건립비와 노동조합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추가함.
- 다.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정함.
- 라.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추가함.

## 개 정 취 지

법인세법의 개정(1997. 12. 13, 법률 제5418호) 및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(1997. 12. 31, 대통령령 제15564호)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주택회보